

바

성폭력

Vol. 5
2012 하반기

1

5 기획특집 [성범죄 친고죄 폐지, 현장의 소리를 듣다]

- 8 친고죄, '피해자 사생활 보호'라는 궤변
- 13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 분석
- 25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 방향

2

31 쟁점과 입장

- 32 정부 반성폭력 정책이 답답한 이유: 문제는 '관점'이야!
- 36 2012년, 여성 몸 수난기 : 여성의 몸은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41 대안읽기

- 41 성폭력 경험의 글쓰기 : 열림터 치유 글쓰기 프로그램

44 프리즘 [성폭력과 '우리 마을']

- 46 무시무시한 동네 한 바퀴
- 52 성폭력 문제를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 56 불안 사회 맞춤형 '안전' 정책의 한계

61 성문화 읽기

- 61 여성대통령 시대, 반겨야 하나? 울어야 하나?

3

67 생존자 말하기

- 68 열림터에서 2년을 보내고

74 성폭력과 사람들

- 74 무제

78 사례연구

- 78 스마트폰 채팅에서 스토킹, 성폭력 피해로

4

84 날말퍼즐

86 아낌없이주는나무



1

기획특집 [성범죄 친고죄 폐지, 현장의 소리를 듣다]

친고죄, '피해자 사생활 보호'라는 궤변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 분석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 방향

{ 성범죄 친고죄 폐지, 현장의 소리를 듣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본 친고죄 피해 실태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다. 그동안 성폭력은 주요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경찰의 수사조차 개시할 수 없었다. 2010년 여성가족부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경찰 신고율은 12.3%(강간 및 강간미수)이다. 그동안 친고죄는 성폭력 범죄의 낮은 신고율과 처벌율의 주요 근거로 지목되어 왔으며 여성인권 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3년간의 상담일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친고죄 조항의 존치로 인해 어떤 피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약 500건의 친고죄 피해 사례는 성폭력 친고죄가 법의 취지와 같은 '사생활 보호'로 기능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통념과 함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했다.

따라서 본 기획특집에서는 위의 상담일지 분석 결과를 게재함으로써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친고죄 폐지에 있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친고죄, '피해자 사생활 보호'라는 궤변

형법 제306조 친고죄 조항의 변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폐지 요구에 부딪쳤으며¹⁾ 이후 여성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형법 제306조 친고죄 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됐으나 비장애 성인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친고죄 조항이 존치되었다.

1) 당시 성폭력특별법제정 특별위원회는 친고죄 조항 삭제를 주장하였으나 존속 등 친족성폭력과 신체장애 성폭력만을 비친고죄로 규정한 채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 뒤집기: 한국 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표1)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변동 연혁

| 법령 | 법률공포일 (시행일) | 주요 제·개정 내용 |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94. 1. 5. (1994. 1.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 등 친족성폭력, 신체장애 성폭력 처벌은 비친고죄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은 친고죄 |
| | 1997. 8. 22. (1998.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범위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확장 • 장애인 준강간 처벌 시 정신 상의 장애까지 확대 • 13세 미만 대상 범죄 비친고죄화 |
| | 1998. 12. 28. (1998. 12.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신설하고 비친고죄화 |
| | 2006. 10. 27. (2006. 10.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구금자 추행죄, 장애인 보호시설장의 비친고죄화 |
| | 2012. 12. 18 (2013. 6.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비친고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0. 4. 15. (2010. 4.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대상 친족범위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 |
| 청소년 성보호법 | 2006. 4. 15. (2010. 4.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친고죄 |
| | 2007. 8.3. (2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 반의사불벌죄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2010.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 비친고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반의사불벌죄 |
| | 2010. 4. 15. (2010. 4.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 비친고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반의사불벌죄 |
| | 2012. 2. 1. (2012. 8.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비친고죄화 |
| | 2012. 12. 18 (2013. 6.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비친고죄화 |
| 형법 | 2012. 12. 18 (2013. 6.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상 강간 및 추행에 관한 죄 비친고죄화 |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지 못하는 친고죄

그동안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라는 명목이었다. 친고죄는 그 범죄를 소추해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강간죄나 간통죄 등)와 범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그 소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범죄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성폭력 경험이 공식적으로 드러나 피해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고통 받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친고죄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보호의 역할을 하며 성범죄자 처벌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또한 친고죄는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잘못된 통념을 확산해왔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쉽게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들고 자신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하여 성폭력 범죄를 쉽게 저지르거나 재범으로 이어지도록 기능하였다. 즉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비호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동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². 또한 성폭력 범죄 전체가 아닌 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만을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을 같이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했다³.

2) 서보학(1996),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4호, 1996 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2p.

3) 유숙영(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성폭력 범죄 처벌율을 낮추는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많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시도를 함으로써 또 다른 2차 피해를 양산했다⁴.

고소가 취하된 사건은 소추요건이 구성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된다. 아래 표는 성폭력범죄의 불기소비율 중 공소권 없음의 비율을 강간죄(친고죄), 강간치상죄(비친고죄), 전체범죄 별로 비교한 것이다. 친고죄인 강간죄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비율은 전체범죄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비율의 두 배 이상이지만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불기소비율 중 공소권 없음 비율

| 분류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체범죄 불기소율 | 30.5 | 30.6 | 32.1 | 32.9 |
| 강간치상죄(비친고죄) | 9.0 | 7.5 | 7.4 | 6.5 |
| 강간죄(친고죄) | 71.9 | 72.7 | 74.2 | 73.2 |

검찰청 검찰연감 참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합의 중용, 고소 취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풍토가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해 수사 재판기관에서도 내부 지침 및 전담기구(팀) 등을 마련함으로써, 노골적인 합의중용이나 피해자 비난은 줄어들었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호소되고 있는 문제이다.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문화가 수사 재판 단계에서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한 가해자의 합의중용으로 인해 형사법상 구제과정을 중도 포

4)

기하는 피해자가 만들어진다. 현행 형사법 체계가 성폭력 피해를 경감하고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개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⁵.

전체 범죄 기소율 대비 강간 범죄 기소율 비교

| 분류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체 범죄 기소율 | 46.5 | 47.0 | 41.3 | 41.1 |
| 강간치상죄(비친고죄) | 48.5 | 53.3 | 47.1 | 47.7 |
| 강간죄(친고죄) | 16.2 | 16.2 | 14.3 | 14.8 |

검찰청 검찰연감 참조(%)

위 표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비친고죄로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47.7%로 전체범죄 기소율 41.1%보다 다소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친고적인 강간죄의 기소율은 14.8%로 현저하게 낮아 전체범죄 기소율의 26.3%, 강간치상죄 기소율의 32.9%에 그친다. 즉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가 폭행 협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폭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조항 적용 여부에 따라서 기소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성폭력 범죄의 낮은 신고율과 유죄선고율에 일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본법인 강간죄가 친고죄 조항에 묶여있기 때문에 비친고적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부에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현실은 비친고죄 조항의 성폭력 범죄도 친고죄 조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⁶. 따라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과 기소율 증가 및 성폭력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이호중(2007),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성폭력, 법정에 서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
 6) 장다혜(2012)는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가 각각 비슷한 행위양태를 가지나 양형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재판부가 친고죄 조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사건(강간, 강제추행 등)에서 형사합의 후 소추요건이 사라지는 것과 유사하게 비친고죄 조항(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등)의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관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말한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비친고죄 조항에서 양형상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참작사유가 되며 이것은 친고죄 조항의 효과이다.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분석 결과¹

1.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간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사례 총 3,739건 중 친고죄 조항에 해당되는 1,900건을 1차로 추출, 이 중 상담일지 검토를 통해 친고죄 관련 고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451건을 분석

■ 참여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법학 전공 자원활동가 총 6인²

■ 진행 과정

2011년 12월~2012년 1월 선행분석 작업을 통한 분석틀 마련

2012년 7월~9월 분석 작업

2012년 9월 분석 결과 발표

1)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모든 상담은 비밀담당이 원칙이나 매년 상담통계 발표를 통해 피해 실태를 비롯한 한국 사회 성폭력 발생의 맥락과 경향을 알려왔다. 본 자료는 친고죄 조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사건에서 겪는 피해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알려낼 목적으로 기획된 통계 및 실태분석 자료이다. 본문에서 제시된 사례는 상담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피해자 개인 및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배제하여 기록했음을 밝힌다.
 2) 본 사례분석에 참여한 자원활동가는 김묘진(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지(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영(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정(연세대학교 법학과), 조미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지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다(가나다 순). 소중한 여름방학을 본 사업과 함께해준 자원활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는 성폭력 사건 이후 겪는 2차 피해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상담사례 분석에서는 고소와 관련된 2차 피해 유형만을 추출했으며 고소와 무관한 2차 피해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고소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친고죄의 특성 상 고소와 무관한 2차 피해 역시 친고죄와 관련된 2차 피해로 볼 수 있겠으나³ 보다 구체적인 고소 전후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고소와 관련된 2차 피해’만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다.

2.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 분석 결과

전체 451사례의 다섯 가지 피해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난 사례는 384건(85.1%)이었으며 나머지 사례에서는 여러 피해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의 빈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 결정 관련 중압감(191건, 37.3%) 가해자측에 의한 피해(139건 27.2%), 수사 재판기관에 의한 피해(68건, 13.3%), 고소기간도과(65건, 12.7%), 피해자 지인에 의한 피해(28건, 5.4%) 순이다.⁴

(1) 피해자의 고소 결정 관련 중압감 (총 191건, 37.3%)

피해자가 고소 결정과 관련하여 중압감을 느낀 사례는 총 191건으로 전체 사례 중 37.3%로 나타났다. 고소 결정에 따른 중압감은 갈등의 요인에 따라 1) 피해당사자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고소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 2) 사회적 관계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고소과정에서 직

3)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자,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데 주저하게 만든다. 이것은 친고죄와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이다.

4) 각 유형에 대한 건수는 중복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접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3) 고소준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으로 인하여 고소 망설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 (127건)

성폭력 사실 공개 우려 41건 가족 및 주변인에게 성폭력 피해가 알려지는 것, 이로 인해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고소를 갈등하는 경우 등이다.

보복 우려 28건 고소 후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이다. 심리 불안 14건 피해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부담감을 느껴 고소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충격과 분노, 혼란 등으로 신속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쉽지 않다.

가해자 연민 12건 가해자의 연령, 직업 및 환경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측은함을 느껴 고소 혹은 고소 취하를 고민하는 경우이다. 친고죄 제도 안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된다. (*“남의 앞길 망칠까봐” 또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것 같아서” 고소를 주저거나 고민하는 사례*)

조사 두려움 및 진술부담 9건 수사 과정에 있어 수사관과의 대면이나 심문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위축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고소 전부터 조사 절차에 두려움 및 부담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자책감 7건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고 자책하며 고소를 갈등하는 경우이다. (*가해자를 따라가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해 고소를 고민하는 사례 / 자신도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역고소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사례 등*)

2)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 (35건)

사회(조직)생활 불이익 우려 23건 성폭력 범치는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위에 고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복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

는 가해자와 함께 소속되어 있던 공간 내에서 '몰인정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여론을 마주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례 23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가 18건으로 피해자가 직장 관계나 평판, 향후 경력에 지장을 받을까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다.

조직 내 2차 피해 7건 사회(조직)생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실현된 사례이다. (고소 후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사례 /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해 돈을 노리고 유포한 '꽃뱀'이라는 소문이 난 사례 / 가해자가 조직 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조직적 차원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례)

금전합의 갈등 3건 형사 합의 과정에서 '돈을 바라고 고소했다거나 '꽃뱀'으로 비춰질 것을 염려한 사례이다. 친고죄는 고소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고소를 대신하여 합의라는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가해자측 또한 1심 판결 전 합의를 하면 죄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사례 분석 결과,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는 조건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범죄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를 결심하더라도 돈을 노렸다는 부당한 이미지를 얻게 만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제도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는 조건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이미지가 실추됨을 우려한 사례 / 가해자가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이라 고소보다는 합의를 하고 싶지만 먼저 합의를 요구하면 꽃뱀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사례)

3) 고소 과정에 대한 부담 (24건)

고소 전의 막연한 두려움과는 다르게 고소 과정에 대한 부담에서는 피해사실 입증 가능성이 고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 이후 실제 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내적 갈등과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준다.

증거불충분 우려 18건 성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 고소 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경우이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사건 당사자 외에는 타인이 사건을 목격하기 어렵고, 물적 증거 또한 남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법적 절차에 있어 피해자가 사건의 진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피해자가 향후 고소 절차를 예

상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피해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게 만든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상담한 사례 / 사정한 흔적이나 병원 기록이 없어서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닌지, 'CCTV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녹화가 되지 않아 고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 고소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고려한 사례 / 증거 자료 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

역고소 우려 5건 성폭력 피해를 고소함으로써 가해자가 자신에게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보복성 고소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주변의 조언 등 피해자가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협박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실제 고소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드물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전 역고소에 대한 우려는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 사례 / 주변인이 '간통죄로 걸릴 수도 있다'고 조언하여 고소를 망설인 사례 / '금전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성폭력을 고소하면 이 건으로 고소당할 것 같다'고 우려한 사례)

(2) 가해자측⁵⁾에 의한 피해 (총 139건, 27.2%)

고소 및 합의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비난과 공격, 위협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상당 부분 친고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형사소추 제지의 결정권이 있는 친고죄의 특성을 이용해 온갖 방법으로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합의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한다.

고소 후 합의 종용 60건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합의만 하면 형사 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은 합의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합의 시도는 가해자의 방어진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

5) 가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 친구 변호사 등

하다. 또한 가해자측의 합의 중용으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자 가해자측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되기도 한다. (가해자측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잦은 연락이나 방문을 시도하거나, 직장, 학교 등에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례 / 사건과 상관없는 피해자의 약점이나 고용 조건을 이용하여 합의를 중용하는 사례 / 합의 후 가해자가 말을 바꿔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고소 전 협박 및 위해 26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여 고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이다. 친고죄 규정 안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가 제기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고소를 막기 위해 폭행이나 살해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가해자가 '나는 조직폭력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복을 암시하며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가하는 등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위협한 사례 / '고소하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돕는 직장 동료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의 안위를 위협한 사례)

역고소 및 역고소 협박 45건(역고소 17건, 역고소 협박 28건)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 또는 기타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고소한 사례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취하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피해자는 자신이 오히려 죄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드물기는 하나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는 점은 가해자의 역고소 및 역고소 협박이 피해자의 고소 주저나 포기여에 있어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의하도록 연락하자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이 가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례 / 가해자측이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범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

화간 및 '꽃뱀' 주장 11건 가해자측이 성폭력을 화간으로 주장하거나 소위 '꽃뱀'으로 몰아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례이다.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범죄라기보다 개인 간의 권리 충돌, 또는 '남녀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얻으려는 '꽃뱀'이라고

주장하거나 강간이 아니라 '화간'인데 자신을 곤경에 빠트리려한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기 쉽다. 이러한 가해자측의 주장과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비난받거나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고소 및 합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악의적 소문 유포 10건 가해자측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고소를 막거나 합의를 중용하는 사례이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측이 피해자가 금전(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해 고소 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이나 활동까지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공동체 내에서 비난이나 왕따를 경험하는 등 성폭력 경험 외에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은 고소에 대한 의지 저하 또는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3) 수사 재판기관에 의한 피해 (총 68건, 13.3%)

합의권유 및 중용 31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심 판결 전에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므로 수사 재판관들이 절차상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피해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권유 또는 중용하여 피해자가 위축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수사기관이 가지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수사 재판과정에 있어 담당 형사나 검사 등에 의한 합의 권유는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해자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합의를 중용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

피해의심 17건 수사 재판기관에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한 진위를 의심한 경우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다며 소위 '꽃뱀'으로 의심하거나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을 것으로 여기는 경우, 간통죄나 무고죄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입증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수사관이 '강간 당하면서 왜 도망가지 않았냐', '잘못 고발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합의하의 성관계 아니냐'고 질문한 사례 / 피해자가 사건 후 바로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

음한 것을 이유로 수사관이 피해 진위를 의심한 사례)

고소취소 권유 12건 수사 재판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고소 취하를 권유 또는 종용 받은 경우, 성폭력으로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재판관이 '아는 사이인데 봐주라'고 한 경우 / '애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부킹했으면 뻔한 거지 왜 신고했느냐'고 한 사례 /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하고 서로 합의보라는 식으로 말한 사례 / 경찰이 가해자의 경제력이 취약함을 이유로 고소취하를 종용한 사례)

소극적 수사 8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사 관련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요청에도 수사관이 소극적으로 응대하며 충분한 정보 전달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다. 성폭력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를 거치면 형사 사건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수사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재판과정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지 않을 수 있고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즉 피해자의 사적인 문제로 보는 수사 재판관의 시각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고소를 위해 큰 용기를 낸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크게 저하시킨다. (피해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지문 채취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사례)

(4) 고소기간 도과 (총 65건, 12.7%)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고소기간 도과로 고소하지 못 함 54건

공소시효 및 고소기간 모두 도과함 7건

고소기간은 도과했으나 공소시효 도과 여부 미상 4건

2012년 현재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타 범죄의 6개월보다 긴 1년이지만 상당사례 분석 결과, 신고나 고소를 결심하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시선, 성폭력 범죄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 성폭력 대처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후 곧바로 고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85% 이상이 피해자의 동료, 상사, 교사, 가족, 친인척, 애인, 배우자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앞서 '심리적 요인에 따른 고소갈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도 고소 이후 사회생활과 가해자의 법적 처벌까지 염려하며 고소를 망설인다. 이때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친고죄 조항의 특성은 피해자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으나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하지 못한 사례가 해당 분류의 83%에 달해,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 친고죄 규정에 묶여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은 고소기간 도과로 고소가 불가능함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했고,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질 경우 추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하여 고소 의지가해자 처벌 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피해자 지인에 의한 피해 (총 28건, 5.4%)

성폭력 피해자들은 때론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지지보다는 비난을 받음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마주하게 된다. 조력자가 되어야 할 가족 및 주변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 혹은 외면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염려하고 이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지지 기반 없이 홀로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고소에 대한 의지는 저하된다.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고소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점도 문제적이다.

고소 강요 7건 피해자 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고소를 강요하는 사례이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넘어서는 주변인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고소 강요로 인해 피해자는 고소에 대한 당위성, 해당인과의 관계 등의 사이에서 부담과 혼란을 느끼게 된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친밀한 주변인이 제3자의 법적 개입이 불가능한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 해결 의지를 가진 주변인의 경우, 본인이 가해자 처벌에 개입할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사건의 부담함을 '고소하지 않는(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남자친구가 '난리를 쳐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상담한 사례 / '남편이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동의해서 성관계한 것으로 알겠다고 한' 사례 / '고소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남편이 폭행'한 사례 등)

피해자 비난 및 외면 5건 가족 및 주변인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거나 비난한 경우, 조력하지 않고 외면한 경우 등이다. (술집에서 만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지인이 비난하여 앞으로 다가올 비난들을 우려한 사례 / 애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애인이 이를 무시하며 가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는 사례)

합의 권유 및 종용 5건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인이 합의를 원하거나 이를 종용하는 경우이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자 등이 합의를 하여 고소가 취하되는 문제로 인해 관련 조항의 친고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성인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인 본인에게 고소를 취하할 권리가 있으나 가족 및 주변인의 지속적인 설득에 지쳐 고소를 취하하고 내키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합의는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주변인이 가해자를 두려워하거나 연민하여 합의를 '해주자고' 권유 및 종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이 지인들에게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는 점에 심한 위축감을 느끼기도 한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합의하고자 한 사례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위압감을 느낀 사례 / 가해자 나이가 어리고 불쌍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합의로 마음을 먹은 사례)

고소 만류 3건 법적 절차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가해자에 대한 연민 등의 이유로 가족 및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만류하거나 취하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이다. 특히 고소 이후의 어려움을 이유로 만류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주변인이 우려하

는 내용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성폭력 고소에 대한 불안이나 중압감이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가 적어서 가족이 고소를 말리는 사례 / 증거가 확보 되었음에도 가해자가 역고소 할 것을 남자친구가 불안해 하는 사례 /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가 어려서 용서할까 생각하여 고소를 말리는 사례)

기타 5건 (어머니가 상담한 사례 중) 남편이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례 / 피해자의 선생님이 사건을 덮을 것을 설득한 사례)

3. 소결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관련 갈등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정체성으로 마주하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된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주는 심리적 위축감은 성폭력 가해자 및 수사 재판기관을 비롯한 주변 요인들에 의하여 강화된다. 이 위축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두려움이며, 그러한 시선을 보낼 것이 예상되는 주체에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뿐 아니라 수사 재판기관도 포함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훼손된 존재 혹은 낙오자로 보는 등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 및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지지 받을 사회적 토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소를 망설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성폭력은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경험'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선택하도록 하는 친고죄 조항이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오히려 피해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피해는 성폭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 방향

력의 고통과 고소결정에 대한 책임이 교차됨으로써 겪게 되는 내적 갈등과 불안의 증가, 합의중용을 비롯한 가해자측의 2차 피해, 성폭력을 피해자의 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수사 재판기관의 태도에 의한 심리적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변 여건과 심리적 특성에 의해 가해자 처벌 가능성이 좌우되고 있으며, 친고죄 조항에 해당되는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련법이 의지할만한 사회규약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친고죄로 인한 이와 같은 2차 피해가 나타나는 원인은 피해자가 고소여부를 선택하고 고소된 사건만 제한적으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의존적으로 '사건화' 되는 친고죄 조항의 특성 때문이다. 이 과정은 수사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사건을 공문화하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피해자로 이분된다. 이때 고소를 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형적인(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위축된) 이미지와 배치되는 사람이므로 수사과정에서 허위고소를 제기한 '무고'의 의심을 받게 되며,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따라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는 당황하고 위축감을 느낀다. 또한 피해사실을 발화하기 어렵고, 물적 증거 및 증인확보가 쉽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내적 갈등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소 시기가 늦춰진다. 그 사이 증거 소멸이 발생하는 등 법적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고소 전후과정 가해자의 합의중용 등 협박과 회유가 동반되면서 피해자의 내적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충격에 이어 법적 절차의 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1. 성폭력 처벌법의 실패한 관점 : 친고죄

살펴본 대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사법체계 안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부가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아동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불안요소로 꼽히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성폭력 범죄가 이슈화 될 때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신상정보 공개 확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 치료요법(일명 화학적 거세) 등 여러 가지 법 제 개정안을 쏟아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발의된 법안들은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친고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 여성’일 때 아동이나 장애여성 일 때에 비해 관련 법제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심각한 성폭력 사건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성폭력 사건, 특히 친고죄 조항에 묶인 비장애 성인 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사적인 일로 치부되어 법제도개선의 관심 밖에 남아있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건 입증의 책임을 과중하게 전가하여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실이 형벌 강화 정책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성폭력 범죄의 해결 방안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되문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법제도 마련에 있어 관점 수립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이다.

2. 성범죄 친고죄 폐지와 법제도 개선 방향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전면 폐지 요구는 국내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만의 주장이 아니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권고 받았다.

2012년 8월 6일에는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6,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의원 33인 공동발의로 제출되었고 국회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친고죄 폐지 추진을 포함한 성범죄 해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11월 22일에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다. 그동안 형법 개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친고죄 폐지에 소극적이던 국회와 정부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결과였다.

물론 친고죄 조항 폐지만으로 성폭력피해자들이 성폭력수사 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모두 예방할 수 없다. 때문에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이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국면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성폭력 수사/재판 실태 모니터링

우선 친고죄 폐지 이후 달라진 수사 재판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폭력 수사 재판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대로, 2차 피해 감소와 수사관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는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성폭력 사건 신고율 증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사례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재판기관에서 합의권유와 종용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사 재판기관의 태도는 피해자 보호와 고소율 증가의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수사 재판기관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 수사팀 제도를 각 청에서 전문영역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성폭력 범죄의 형사합의에 대한 근본적 검토

친고죄가 폐지되더라도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현재의 형사 절차 안에서 합의와 관련된 협박 등의 문제는 잔재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형사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측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얻어 합의 의도로 접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재판과정 상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성력(性歷)을 심문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가해자 변호인에 의한 2차 피해도 방지하여야 한다.

● 수사/재판관의 인식변화와 전문성 확보

성폭력의 법적 해결은 가해자 처벌법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인식의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편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게 될 것이다. 법조인의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방안 마련 시급

성범죄에 친고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을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할 '수치스러운 성적 경험'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때문이다. 성별화된 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차별과 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폭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은 더 이상 낮은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당연한 상식과 '네가 피해자인 이유를 설명해내라'는

법의 명령 사이에서 '완벽한 법적 피해자'가 되지 못함에 갈등한다.

성폭력의 법적 해결은 가해자 처벌법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제도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성인식의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사회통념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다. 법이 실제 집행되는 사법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조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성을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묶어두려는 사회적 통념이 변하지 않는다면 은폐되는 성폭력 사건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젠더 정책은 한 나라의 성문화를 바꾸는 첫 걸음이자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현재 모든 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인권교육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의 정책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적극 도입하여 성인지 정책을 활성화 하는 것 역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문화 바꾸기의 정책으로서 확대되어야 한다.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적인 기틀과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유근(2012),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들의 체계상의 문제점", 『성폭력 법령, 이대로 좋은가 성폭력 법령에 대한 전반적 고찰』 심포지엄 자료집,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실.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2010),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존폐에 관한 논의」, 자료집.

서보학(1996),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4호 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숙영(2003),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이호중(2007),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성폭력, 법정에 서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푸른사상.

장다혜(2012), "성폭력 '형사 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정상규(2012),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 「여성 아동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증인보호와 지원방안」,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외(2010), "성폭력,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자회견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검찰청 검찰연감 2007년-2010년 자료.

2

쟁점과 입장

정부 반성폭력 정책이 답답한 이유: 문제는 '관점'이야
2012년, 여성 몸 수난기 : 여성의 몸은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대안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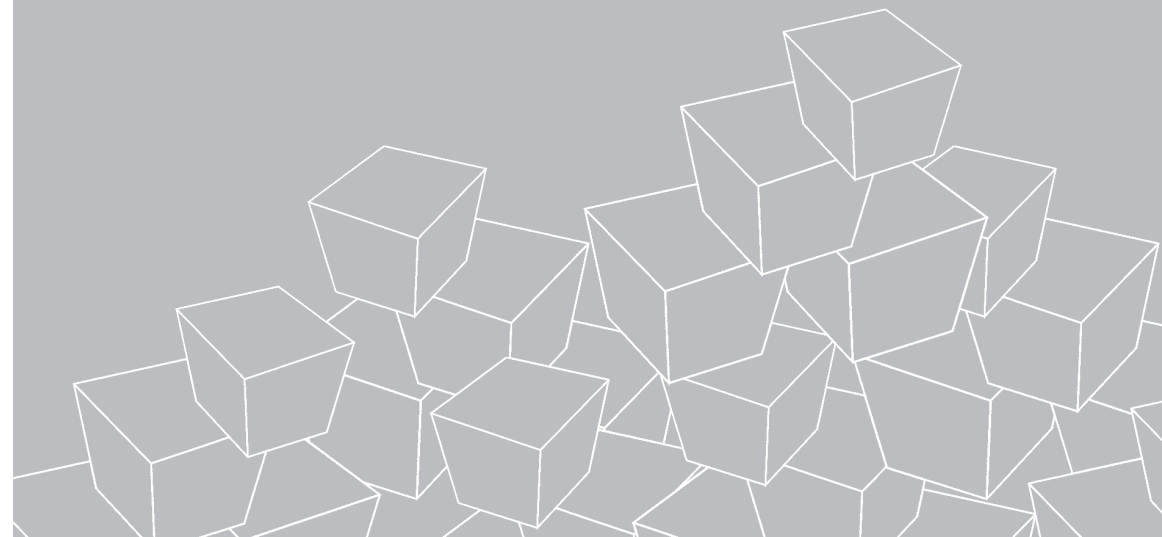
성폭력 경험의 글쓰기 : 열림터 치유 글쓰기 프로그램

프리즘 [성폭력과 '우리 마을']

무시무시한 동네 한 바퀴
성폭력 문제를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불안 사회 맞춤형 '안전' 정책의 한계

성문화 읽기

여성대통령 시대, 반겨야 하나? 울어야 하나?



정부 반성폭력 정책이 답답한 이유

: 문제는 '관점'

배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올해 여름 잔인하게 묘사된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상담소에도 많은 문의 전화가 왔다. 상담소는 스무 해가 넘는 동안 성폭력은 비일상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일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범죄임을 알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올 여름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의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방식과 정부가 다시금 대책으로 내놓는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을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무시되는 현실을 느꼈다.

상담소는 이에 다시 한 번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 <반(反)성폭력 정책, 관점을 묻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진짜 강간'을 누가 만들고 있나?

페널로 나온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반성폭력 운동이 급진적이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미약한 이유는 그만큼 성폭력이 '정상화' 되어 있기 때문임을 짚으며 탈정치화된 반성폭력 정책의 위험성을 드러내었다. 성난 여론에 부응한 정부의 강경처벌 일변도의 반성폭력 정책이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통념을 강화하고 '진짜 강간'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을 재생산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범죄 언론 보도가 2006년 민우회에서 마련한 '성폭력 기사 보도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양해야 할 보도 방식—예를 들면 피해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고, 가해자를 격리시킬 처벌 정책을 불분명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언론과 정부의 정책이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 부각되게 하면서 대부분의 가해자가 실제 성폭력을 가했음에도 자신은 '성폭력(=잔혹한 강간) 가해자'는 아니며 끝까지 부인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라는 명명으로 인해 자신의 도덕성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반발감이나 억울함을 강하게 갖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은 어떤 전형을 따르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특정한 성폭력 사건들만 모델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성충동 약물치료'라 불리는 화학적 거세는 성욕과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섹슈얼리티(성)의 영역에 침범하는 성폭력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을 동일시 해버리고, 성폭력이 마치 성욕과 개인의 정신적 결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함으로 개인을 처벌하면 해결될 문제로만 여기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처벌 강화와 제도화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장임다혜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자문위원은 2000년도 중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강화 경향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선언하고 온전히 처벌하기를 원해왔던 여성주의의 지향과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지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과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범죄 피해에 대한 회복이나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 가해자의 범죄 책임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보적 관점, 회복적 관점, 예방적 관점의 실천이 모두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현재의 양형기준제 하에서 ‘형사합의’가 성폭력 범죄의 낮은 양형과 집행유예 선고 여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참작사유로 고려할 때의 판단 및 평가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2004년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개별 피해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하나로 관리하려는 압력을 가시화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NGO단체인 성폭력상담소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부당한 현실에 대응함으로써 많은 법의 개정과 정책의 부분들도 이러한 행동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위탁기관은 정부정책에 저항하지 못하는 현실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정상성’을 흔들어라

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처벌 강화 일변의 반성폭력 정

책은 실제 성폭력 발생률을 낮추거나 신고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명백한 피해자만 보호하고 명백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는 여성주의가 주장한 바와 배치될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다시금 침묵 속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한 잔인한 성폭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폭력은 그동안 ‘정상’의 범주로 용인되어왔다. 정부가 이러한 ‘정상성’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정부의 반성폭력 정책에 문제제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가해자 처벌 강화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친고죄 폐지, 공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언론사 가이드라인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우려스럽다.

2012년, 여성 몸 수난기

: 여성의 몸은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김두나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최근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이나 출산, 인공유산과 같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여성의 몸이 국가나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로 취급되며,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침해당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과거 산아제한이 필요했던 1960~70년대, 국가는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무상으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피임약을 배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저출산’ 문제가 중대한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 중절, 피임 등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백팔십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소원 결과가 발표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지난 40년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피임약을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한 십대 여성이 인공유산 중 사망한 일도 발생했다. 올

한해 여성들은 몸과 건강, 삶에 대한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여성이 배제된 피임약 정책

지난 6월 7일, 식약청은 그동안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던 경구용 사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던 사후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연일 이어졌다. 그러나 피임약의 부작용 여부와 오남용, 인공유산 증가에 대한 우려, 성문란 조장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논의에서 정작 피임약 복용 당사자인 여성의 현실과 경험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약에 의한 부작용이나 오남용, 피임 실패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인공유산, 출산 모두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인데도 정작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은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 정책을 경제나 발전의 논리에 따라 바꾸며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실효성 있는 피임약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부작용이나 해외 사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40년간 피임약을 복용해 온 한국 여성들의 피임실태(피임률, 피임방법, 복용기간 및 주기, 부작용, 오남용 실태, 피임에 대한 인식 등)를 제시하고 연령과 소득, 장애, 혼인 여부 등에 따른 피임약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임 교육

을 실시하고, 피임약의 효능 및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복약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피임약을 구입하고 복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식약청이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안은 반대여론에 부딪혀 보류되고 현행대로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공유산 현실 간과한 시술자 처벌 합헌 판결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인공유산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당사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와 타인의 통제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승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헌 판결이 문제적인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사익'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생명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험과 현실을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제재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

다. 인공유산율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공유산 건수 중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사유의 인공유산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법이 구체적인 현실과 사회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기를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또는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공유산을 선택한다. 즉,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여성들이 성관계와 임신, 출산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와 미비한 사회제도 안에서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과 경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공유산을 범죄화하는 것은 결코 인공유산율을 낮추고 여성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공유산율은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피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남성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양육 책임 분담 등과 같은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줄어든다.

재생산 정책, 당사자인 여성이 결정해야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 자신에게 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은 물론 이와 관련한 피임이나 인공유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당사자인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절하고 결정할 일이다. 국가의 역할은 여성의 결정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여성의 몸에 대한 정책은 각종 이해관계, 경제적 논리의 경합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한다면,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기 몸과 삶의 주체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는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여름 | 본 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드러내기라고 생각한다. 혼자만의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내는 것. ‘개인이 겪은 상처를 외부로 드러낸다’는 것은 행위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의 의미와 더불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불합리한 사회적인 조건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상처에 또 다른 사회적인 의미 부여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본다. 피해를 드러냄으로써 갖게 되는 치유의 힘은 분명 시작하기 수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힘은 단단하게 쌓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림터에서는 해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난 여름 열림터는 치유하는 글쓰기 프로그

램을 매주 1회 2개월 간 진행하여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생활인 서로가 특별히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아도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숨기기 위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활인들에게는 긴장감을 풀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다. 그러나 서로가 친해지기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짐작하거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하는 글쓰기는 생활인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같이 일상을 나누면서도 알지 못했던 서로의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치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번 글쓰기 프로그램은 열림터 생활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했는데, 바로 글쓰기를 진행해주신 선생님 역시 열림터에서 생활한 분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이야기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누군가의 성공스토리가 아니라 생활인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되는 선생님의 성폭력 피해 치유 스토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글쓰기를 하면서 ‘나도 해볼까’ 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어’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 이런 점들은 생활인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열림터 생활인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감안하면 글쓰기 프로그램은 글쓰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 귀담아듣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등의 공부도 함께 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덕이었다.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치유 글쓰기의 장점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생긴다는 것이다. 글은 특별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자신만의 글이 쌓이는 것을 보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글쓰기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자신만의 책을 한 권씩 만들었다. 나름대로 제목도 붙이고 표지도 만들면서 세상에 한권뿐인 책을 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글쓰기 선생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서 지금 자신이 치유하는 것처럼 또 다른 치유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인들이 적었던 소감 중 일부를 소개한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언니가 말하기 힘들었던 내면의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웠다.”

“처음엔 글쓰기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글을 쓰면 쓸수록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았고, 친구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치유하는 글쓰기뿐 아니라 다른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치유의 시간은 일회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 지속되는 한 오래도록 함께할 것이고, 요구되고, 필요할 것이다.

{ 성폭력과 '우리 동네'

최근 여기저기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가 한창이다. 살기 좋은 마을, 모두가 행복한 마을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마을 공동체의 순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안전'이 화두다. 동네에서는 부모들이 모이면 혹시나 자녀가 위험에 처하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안전 지도'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지만, 실제 상담 현장의 통계는 오래 전부터 성폭력 가해자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성폭력의 문제는 특정한 가해자에 의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자 인권 감수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성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일상을 영위하는 '동네'라는 공간은 대부분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 형

성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범죄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상공개 제도는 우리 '동네'의 어디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전자발찌는 범죄자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처벌 정책들은 일상의 공포를 가중시킬 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폭력 해결의 특효약이 되지 못한다.

과연 성폭력 문제에 있어 '동네'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세 편의 글을 마련했다. 성폭력 문제를 통해 자신의 오랜 '동네'를 사유하는 첫 번째 글에 이어 실제 지역 구성원들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벌이고 있는지를 두 번째 글을 통해 들여다본다. 지역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살펴본 이후에는 마지막 글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안전' 정책이 실제적인 성폭력 예방 근절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번 프리즘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막연한 불안이나 운신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의 공간으로 여기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무시무시한 동네 한 바퀴

있지

오늘 밤 동네의 어둠이 무섭나요?

가로등만 드문드문 불 밝히고 서있는 밤길. 바짝 긴장한 어깨를 움츠린 채 걸음을 재촉한 적이 있는지?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에 청각을 곤두세우고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어쩔 수 없다. 그때 꼭 불쾌한 상상력이 발동된다. 최근에 본 20대 여성 성폭력 기사와 오래 전부터 듣던 술한 괴담들, 그 언저리에서 상상이 출발한다. 강간, 납치, 심지어 토막살인까지. 뉴스 속 여성들의 최후는 왜 그리도 참혹한 건지, 내가 내일 아침뉴스의 주인공이 되진 않을지... 식은땀이 또 한 방울 흐른다. 하지만 여긴 내 '나와바리'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뛰어놀고 살아온 동네다. 지구대가 어디있는지도 알고, 도움을 요청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는지도, 또 강간범들이 선호하는 으스스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애인과 밀애를 나누기 좋은, 그런 곳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조차 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낮에는 더 없이 친숙하고 아늑한 동네가 밤이 되면 나를 잔뜩 위축시키는 공간으로 변하는 일,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놀던 놀이터가, 피구하며 뛰놀던 학교 운동장이, 친구들과 캔 음료 하나만으로도 마라톤 수다를 떨던 공원이, 학교 가던 골목길이 밤이 되면 무시무시한 공간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일까, 우리 동네는 공장지대와 인접해 밤엔 인적이 드물어 정기적으로 경찰차가 순찰을 돈다. 한 번은 인근 지역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청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동네에 있는 몇 개의 가로등에는 빨간색 스위치가 달려 있다. 위험할 때 누르기만 하면 순찰차에게 바로 연락이 간다. 하지만 아직도 한 번도 눌러본 적도, 누군가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사실 옆 동네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 말고는 실제 우리 동네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 괴한이 나타나 밤길을 혼자 걷는 여자를 겁탈했다는, 소문이나 기사에서 나오는 일들 말이다. 사실 나는 매일 두려움에 떨며 길을 걷진 않는다.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는다면, 보통 늦은 귀가를 할 때는 낮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르는 괴한이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니다. '에이, 설마'하며 방심(?)하며 밤길을 걷는다고나 할까. 솔직히 난 밤길을 좋아한다. 특히 좋아하는 노래가 가득 든 플레이어를 들으며 가로등만 있는 호젓한 길을 걷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이런 내게 엄마는 오랫동안 밤길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해온 분이다. 밤길 좋아하는 내가 그나마 경계심을 갖게 된 건 엄마의 공이 컸다. 요즘도 나 혼자 운동장에 뛰러 나가려 하면 혼자 못 보낸다고 서둘러 따라 나선다. 이게 다 예방차원이라나. 동네에 찾아온 밤,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하지만 뭔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 일까. 엄마의 귀가독촉전화를 받을 때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건 내가

아직 ‘안 당해봐서’ 그런 걸까?

이웃 남자와 함께 살기

엄마는 늘 말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슈퍼 아저씨, 옆집 오빠 조심해라.” “아저씨들 오빠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라.” 그 덕분인지, 아님 엄마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건지 나는 경비아저씨로부터, 슈퍼 아저씨로부터, 옆집 오빠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은 없다. 하지만 문방구 아저씨로부터, 이웃동네 오빠로부터, 학원 선생님께서도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엄마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한 걸까. 아님 유추해석을 하지 못한, 명칭하고 부주의했던 내 탓일까. 하지만 난 나도, 엄마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더 조심하지 않았던 나를 탓하지도, 내게 더 꼼꼼히 주의를 주지 못하고 나를 더 보호하지 못했던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상황이 똑같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문방구를 가지 않고, 오빠와 인사도, 말도 나누지 않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그 일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동네에 있는 가게에 가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말도 나누지 않고,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지룰지 모르니 이웃들을 늘 경계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서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나는 성폭력 예방담론이 여성이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생각마저 들곤 한다. 내게 관계를 맺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선 경계하고 봐야 하니깐. 내겐 딱 봐도 건장한 남동생이 하나 있다. 워낙 오지랖이 넓다보니

1) 나에게서 ‘성폭력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다. 그냥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기엔 내 자리가 너무 협소해지는 것 같고, ‘생존’이라기엔 내가 큰 짐을 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성폭력을 히로에라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 중 하나로 정의하는 게 내겐 가장 적당한 무게감을 주는 것 같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에게 이 표현이 무례하게 읽히거나 혹은 너무 가볍게 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네 꼬마들에게도 말을 잘 건네는 편인데, 아마 멀리서 내 동생이 자신의 딸에게 말을 건네는 걸 본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볼 것이다. 무슨 공공이가 있어서인지 하고. 동네이웃도 조심조심 사귀어야 하는 요즘이다.

내가 너무 안일한가?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가? 듣도 보도 못한 괴한보다는 아는 사람들, 특히 동네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빨간벨을 설치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목적 이외에 이웃들과 말을 섞지 않는 정책을 쓰는 게, 양적으로나마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말 슈퍼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동네 오빠,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인가? 우리가 조심하고 안 만나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한다면 성폭력은 막을 수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오히려 텅 빈 놀이터, 텅 빈 공원,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사람들. 자꾸 단절된 동네풍경만 떠오른다.

여기서 우리는 큰 착각을 한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1차적으로 조심하면 된다는 것. 밤에 안 나가고 이웃 남자들을 조심한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성폭력의 원인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아주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전화기도 꺼놓은 채 술을 진탕마시고 밤늦게 들어온 내게 엄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넌 당해도 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엄마가 진심으로 그 말을 했을 거라 생각지 않지만 그 말은 앞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난이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서, 법정에서 술하게 듣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잠재적 피해자만 조심해서 될 일인가 하는 것이다. 동네에서마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맘 편히 다니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건가. 그런 점에서 성폭력 전과범의 거주지 공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 동네에, 그것도 우리 바로 옆집에 산다고 상상해 보자. 공원에서, 슈퍼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했던 행각들을 상상하게 돼 제대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고립을 통해 감옥 밖 감옥에 성폭력 전과자를 지속적으로 수감시켜 죄의 중함을 알게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전과자의 인권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알려진 전과자 옆에 사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만약 전과자의 옆집 사람이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은 탓일까? 사람들은 점점 산책도 않고, 운동도 나오지 않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과자를 우리 동네에서 내쫓으면 해결이 될까? 그런데 가끔 나는 헛갈린다. 가해자, 전과자, 잠재적 가해자를 배척하면 성폭력이 사라지는 건지,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전과자가 또 가해자가, 잠재적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 어쩌면 동네 공동체 속에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 같이 들자, 동네 한 바퀴

난 이렇게 추운 요즘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야행 산책을 나간다. 밤하늘로 뿌옇게 피어오르는 입김을 보며 어지러운 생각들을 한 올 한 올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운 사람들의 안부를 생각하곤 한다. 또 춥다고 집에만 있으니 배 둘레도 급작스럽게 늘어났기도 하고, 엄마는 여전히 이런 내 습관이 탐탁지 않다.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고들 하니까. 지난 9회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다시보기>에 걸렸던 ‘밤길’이라는 영상 보신 분이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 동네다. 내가 카메라를 들고 혼자 동네를 누비며 찍었던 영상이다. 익숙하던 동네의 밤을 카메라를 통해 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영상을 본 분들의 반응도 재미있었다. “엄마가 기다리니 집에 일찍 들어가자.”

부터 “밤길을 사수하자.”는 메시지까지. 여러분의 동네는 어떤지? 밤에는 괴한이 도사리고 있는 동네? 아니면 잠재적 가해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사는 동네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 한다. 그래도 오늘도 한 번 돌아보려 한다. 무시무시한 동네 한 바퀴를.

성폭력 문제를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박신연숙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약칭 ‘좋은 세상’)은 서울 동작지역의 풀뿌리 여성단체이다. 도시 속 소외된 공간을 서로 만나 소통하는 마을로 만들고 여성들 스스로 일상적 실천을 하면서 마을에서부터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2010년 1월 발족했고,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즐겁게 마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마을은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마을 속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안전한 마을이란 폭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마을이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발견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을이다. ‘좋은 세상’은 상담 활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를 접하고는 결국 이 여성이 살아갈 곳은 마을인데 지금 마을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일이 흔치 않다. 언론을 통해 아동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이웃은 더욱 믿을 수 없게 된다. 많은 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마을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세상’은 성폭력 문제가 일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 결국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자주 만나고 잘 알고 서로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기본에서 시작해 비폭력 배움터, 거리 상담, 지키자 데이 등의 마을 단위 공동체 운동과 여성인권에서 출발한 여성주의 돌봄 활동을 한 것이다.

‘좋은 세상’은 무슨 일이든 하게 되면 먼저 사람부터 만난다. 그 일에 제일 관심 많은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속에서 함께 할 사람도 찾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그 일에 필요한 자원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직접 주민을 만나고 동네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고, 학교, 주민센터, 지구대도 찾아다녔다. 만나면서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함께할 협력자들을 찾는 것이었다.

상담소에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마을에서는 어떤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우선 지구대를 찾아가 물어봤다. 가정폭력의 사례는 1주일에 3~4건 신고가 들어오고, 성폭력은 지하철 성추행 건이 많다고 했다. 그래도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 특별히 잘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마을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성폭력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주민들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학부모회장, 교사 등 이렇게 만난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은 그나마 여성폭력 지원기관이 많은 편인데 주민들은 정작 잘 모르고 있다는 것과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주민 접촉이 많은 마을의 유지 분들, 자녀를 키우며 안전 문제에 민감한 전업주부 학부모들은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좀처럼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좋은 세상’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여성주의 교육을 시키고 여성들을 발견하고 여성들을 키워가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 활동을 하고,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마을 공원에서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를 열고, 동네 꼬마들과 함께하는 안전 마을 자원활동을 한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즐거운 마을 배움터가 열린다.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높여나가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좋은 세상’은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를 돌아보는 동네한바퀴 활동을 4년째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웃 간의 소통을 매개하여 마을을 이어주는 것, 마을의 소식들을 나누고 돌봄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 마을의 약자를 돌보기 위한 관계망을 끊임없이 마을에서 확대하는 것, 그것이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는 ‘좋은 세상’의 기본 철학이다.

‘좋은 세상’은 2011년 7월 ‘동작구 상도3 4동 아동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를 발족했다. 주민센터, 지구대,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주민모임 등이 연락을 하고 첫 모임을 했는데 20여 군데, 30여 명이 참여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면서, 작은 마을단위의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고 주민과 주민 간, 주민과 각 기관 간 촘촘한 관계망을 짜야 하는데, 누구든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먼저 시작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지역연대의 발족 계기이다.

마을 네트워크는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무엇을 폭력으로 인식하는지, 왜 폭력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은 여성의 눈으로 폭력을 인식하는 젠더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지역연대에서는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젠더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했고, 10월 7일엔 제1회 우리 동네 평화인권축제 ‘지키자 데이’를 개최했다. ‘지키자 데이’는 무엇보다 지역연대 참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갔

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축제 제목부터 주민들에게 공모하여 선정했으며 당일 행사 기획 및 준비, 진행, 홍보 등 모두가 작은 역할이라도 나누어 맡아 진행했다.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축제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하니 즐겁게 해냈으며, 모두가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좋은 세상’은 처음에 사람이 좋아서 만났고, 특히 이웃을 많이 알게 되고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모임에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시켰고, 소모임별로 일상적 지역활동을 전개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이중 풀씨모임은 지렁이 퇴비화를 통해 일상적 환경실천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가정 안에서 자원화하고, 내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 학교부터 동네 골목길 화단까지 지렁이를 기르면서 흙을 살려낸다. 힘없고 약한 지렁이를 돌보듯이 마을의 약자를 돌보기 위한 관계망도 끊임없이 마을에서 확대해 왔다. 텀모빌팀은 일주일에 한번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굳이 상담이라기보다 청소년들과 즐겁게 함께 놀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들과도 긴밀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유치원과 학교, 자치회관, 복지관과 관계 맺고 점차 그 속에서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여성 리더들을 키워가고 있다.

‘좋은 세상’은 소박하지만 작은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성폭력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바로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힘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개인의 성장과 마을의 변화를 실감하게 됐다. ‘좋은 세상’은 마을의 작은 모임들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성폭력 문제를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가 많아지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 사람들과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싶다.

불안 사회 맞춤형 '안전' 정책의 한계

토리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 제 개정은 가해자 형벌 종류와 수사재판절차상 피해자 지원 제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더불어 시민들의 성폭력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전 정책'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왔다. 이에 따라 CCTV 설치 확대, 우범지역 관리 및 순찰 강화 등 치안을 중심으로 안전 정책이 마련되었고, 성폭력 예방 정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동반된다는 점이 다른 성폭력 예방 정책과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그 특성에 맞는 효과를 내고 있는 정책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CCTV 설치 확대와 차이점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주요 사업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이다. 해당 사

업을 포함한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은 크게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과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나뉜다.

| 분류 | 내용 |
|-------------------------|---|
|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여성 보호 안전망 구축 | - 시·군·구 단위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10)하여 소지역 차원의 대책 추진체계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 -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안전지킴이」 등 주민 참여 시스템 운영 |
|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 어린이보호구역(09~), 공원·놀이터(11~) 및 학교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시·도 단위에서 운영하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시·군·구 단위로 확산시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취지로 발족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5월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과 2009년 10월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 추진과제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설정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에 아동보호 관련기관 등을 추가 확대하여 2010년 1월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구축하였다.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정책화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가 출범한 지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실제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실행되고 있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된 2012년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 사례인 마포구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살펴보면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성폭력 추방 캠페인', '환경개선사업(벽화그리기)',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활

동'이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 운영과 의료, 교육, 법률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위험 환경요인 정비작업을 하여 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의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해당 사업들을 분류해 보면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 캠페인,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망 구축으로 나뉜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사업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반성폭력 운동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하던 성폭력 예방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순찰(방법대)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망 구축의 경우에도 기존 성폭력 상담소들이 생존자 지원을 위해 의료 및 법적 연계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 할만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기획한 정책이라면 행정안전부의 치안과 감시 관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 발생 감시를 목표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일 수 있다.

성폭력 예방 정책의 지역사회 공동체적 접근은 CCTV로 골목길을 감시 하며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해자를 주민 개개인이 감시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으며, 내 주변의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감수성을 높이는 결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발생의 배경이 되는 성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나가는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예방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성폭력을 둘러싼 '안전' 정책이 괴물화된 상상속의 가해자 집단을 막연하게 설정하고 그 외 범주의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한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내는 정책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근거하지 않고, 그 통념을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가해자 '적'을 설정하는 방식의 불안에 기반을 둔 정책보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주민 참여자들의 성인지 교육 내용과 시간을 검토하고 사회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점검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모든 반성폭력 정책은 어떤 이해관계보다 성폭력 근절 및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나의 이웃에 성폭력이 발생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적극 개입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빈틈을 메울 아이디어로 지난 3년간 본 상담소에서 운영했던 젠더감수성교육을 통해 공유된 가치들은 의미 있다.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운영된 '성폭력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프로그램은 제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사람들과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 개개인의 역할을 고민하며 반성폭력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젠더감수성을 훈련하는 자리였다. 3년 간의 교육에서 공동체성과 관련하여 공유한 가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내가 성폭력을 피할 방법을 불안하게 고민하기보다 반성폭력 시민의식을 만들어나가는 것, 안전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만 얘기되지 않도록 할 것, 안전할 권리를 인권의 배경에서 얘기할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성폭력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나와 내 주변과 가까운 문제로 받아들이는 상상이 필요하다. 때로는 자신에게 낯설고 불편한 가치관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여성대통령 시대, 반겨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은심 |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대표

여성가족부의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은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지만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반성폭력 정책이 절실하다.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이 젠더감수성 확산과 맥을 함께하며 보다 실질적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정책가이드/성폭력방지/사업개요/ 주요정책: 성폭력방지활동 강화'
- 여성가족부 블로그 및 '여성아동지역연대 우수사례' 관련 기사

75.8%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지만, 18대 대선의 여운은 여러모로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사의 한 획을 긋겠지만, 18년에 걸친 독재로 인해 지탄을 받았던 故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라는 점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마지 않는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여성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점만으로도 환영논평을 낼 법한데, 최근의 분위기는 석연치 않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야심찬 구호를 내걸고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도 왜 여성운동단체가, 혹은 여성인 내가 그다지 기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관통하는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여성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나?

사실 박근혜 당선인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전면내 내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예측하지는 못했다. 그간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는 그다지 여성정책에 대해 크게 비중을 할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 ‘여성대통령 후보로서 여성의 인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야당의 맹공을 받았을 때,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호주제 폐지와 성충동 약물치료법(화학적 거세) 정도였다. 사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모든 여성운동단체 및 여성정치인들이 참여한 공동활동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의 단독적인 성과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과연 여성의 인권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통틀어서 여성 인권에 특화된 활동을 그다지 전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으로서 스스로를 내세운 적도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의 보수적인 표심이라던가 국방 및 안보 문제에서의 ‘북한과 전쟁 발생시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이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같은 남성들의 불안을 고려했을 때, ‘여성대통령’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시기상조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사전선거운동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등 ‘강한 리더십’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였다.

사실 18대 대선은 어느 대선에 비견해서도 여성 후보가 많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정희 후보, 심상정 후보를 비롯하여 김소연 후보, 김순자 후보까지 총 5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하거나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어느 여성 후보 또한 본인이 ‘여성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표심이 중도로 집결되는 선거정치의 특성상, 비주류인

야권 후보들이 오히려 더욱 비주류임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심분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진보가 가지는 방향성이 여전히 계급문제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의 의제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기존의 보수 이미지를 혁신하고 싶었던 박근혜 당선인의 차지가 되었다. 특별히 후보 간 정책 및 공약의 변별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18대 대선에서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박근혜 당선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지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평생에 남자들이 여자 뒤에 서는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는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는, 서글프면서도 마음이 답답해진다.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날렸던 대처를 기억해보면, 철의 여인 대처가 집권 하던 시대는 그다지 인권적으로 발전되었던 시대가 아니었다. 대처는 한편으로는 TV 광고에 나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인자한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던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시작을 알리던 대처의 시대는 많은 민초들의 눈물과 함께 막을 내렸다.

국정원 여직원의 민주당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논란에서 보여지듯,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관’은 여성을 생물학적 성별로 치환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지위와 다른 사회적 관계를 연결 짓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단지 ‘여성’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장 또한 지지한다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관’이란 개인적인 온갖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위기의 순간에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 둔갑해서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거나 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여성 인권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야당의 낙후한 프레임으로는 박근혜를 넘어설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에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대통령’ 전략에 대해 사실상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매우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의 ‘박근혜 그년’ 논쟁에 이어 연세대 황상민 교수의 ‘박근혜는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발언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당선인을 향한 야당의 대응은 야비하거나 천박했다. 남성 정치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막말을 늘어놓으며 깎아내리는 것 이외에 정치 공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편 정치인이 ‘여성’이거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일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 후보가 이를 상쇄할 개인적 특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 같은 노골적인 조롱이나 비하는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조롱이나 비하는 특권에 대한 것일 때 풍자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욕이나 혐오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은 그간 박근혜 당선인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 등으로 맞서 왔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박정희의 아들이 아닌 박정희의 딸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기간 내내 고전하였다.

더 나아가 박근혜가 ‘여성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한 이유로서 내세운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와 같은 ‘여성=모성애’로 등치시키는 방식이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안

철수 그 누구라도 직접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 양육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낙후한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여성이 공적 사회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기존의 어머니 역할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사회생활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남성과 똑같이 야근을 얼마나 할 수 있나의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한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미래지향적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을 때, 야당은 여전히 아이 양육도 하지 않는 여자를 운운하는 낙후한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미국의 다음 대선에서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해도 이는 힐러리가 뛰어난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것라기보다는, 남편 클린턴을 뛰어넘는 야심만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야당의 대응에 대해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야당을 지지할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정말로 여성의 인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정치개혁이나 경제정책에서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여성 분야에서만 몇 가지 특화된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에서 가해자 형벌만을 강화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제안했음에도, 여성 인권과는 상관없이 국민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성들로서는 환영할 수도 반가워할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여성대통령의 당선보다 더 두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3

생존자 말하기
열림터에서 2년을 보내고
성폭력과 사람들
무제
사례연구
스마트폰 채팅에서 스토킹, 성폭력 피해로

열림터에서 2년을 보내고

돌고래

그러게 2년을 살았는데,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뭘 했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짐을 싸고 새집으로 출발을 기다리는 전날에도 잠이 안 왔다. 아침이 돼서 조화 쌤이랑 공명 쌤이랑 여름 쌤이랑 나랑 쌤이랑 다 같이 짐을 차에 실어 넣을 때도 꿈꾸는 것 같았다. 열림터에서 뼈를 문졌다며 장난치곤 했는데, 정해진 입소 기간 2년이 흘러가고 망원에 집을 구해 독립 준비를 했다.

열림터에서 지낼 때는, 11시 넘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시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독립을 하니, 피곤해서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간다.

열림터 2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2년 동안 고소를 진행했고, 2년 동안 편입 준비도 해보고, 수능 공부도 해보고, 리치몬드에서도 일하고, 선생님들과 부딪히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웃고 울고... 작은 말하기

다녀와서 실신할 듯이 울기도 하고... 2년 동안 다큐멘터리도 찍었다. 요가도 한 1년 했다.

문득 몇 가지 일들이 기억난다.

복옥 쌤과 나의 기억

처음에 열림터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힘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방에만 하루 종일 누워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누워만 있었다. 썬터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있을 때도 무서웠다. 아빠가 들어올 것만 같았다. 악몽도 꾀다. 아침에 일어나면 8시든 9시든, 숙직방에 계신 복옥 선생님께 달려갔다.

‘악몽을 꿴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선생님은 따뜻하게 들어 주셨다.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들어주셨다. 한 날은, 복옥 선생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선생님 하신 말에 마음이 콕 아팠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무서운 것을 담아 두고는, 예전처럼 선생님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내 마음에 뭔가 막히는 것이 있었다. 나는 편해지고 싶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불편함을 털어버리고, 선생님과 다시 편해지고 싶었다. 선생님께 솔직하게 털어냈다. 선생님은, ‘아 그랬구나, 쌤이 그랬어?’하고 놀라신 것 같았다. 며칠 뒤에, 선생님께서 돌고래가 서운한 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셨다. 그때 맘이 따뜻해지고 안심되었다. 감사했다.

송미현 쌤과 나의 기억

작은 말하기 모임에 갔다. 몇 번 째 작은 말하기였는지 모르겠다.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왔다.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야기 모임인데, 그날 따라 온몸에 긴장을 하고 있었다. 맨 마지막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열림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페에서 모임이 일어난 터라. 나는 한달음에 열림터로 돌아올 수 있었다. 대문을 열고, 거실문을 열었을 때, 난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동생들이 달려왔다. 송미현 선생님도 달려왔다. “돌고래야 무슨 일이니, 응?” 나는 울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는 다시 울었다(울음이 나와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의미의 절레절레였다). “응, 그래. 말 안 해도 괜찮아, 실컷 울어, 울어버려라.” 그렇게 나는 선생님 허벅지에 누워서 울었다. 소리를 지르고,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울면서 내가 기절해 버리기를 바랐다. 그냥 울다가 너무 힘이 빠져서 기절해 버리기를 바랐다. 그냥 죽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이 고통이 끝났으면 바랐다. 그래도 나의 정신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힘이 빠지는 듯 정신을 잃을 듯 희미해졌지만, 끝까지 내 정신은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깨어있어.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실컷 울었다. 편하게 실컷 울게 해준 선생님이 고마웠다. “그래, 네가 거기 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말해주셨다. 허벅지를 베게 해주시고, 올라고 말해주신 선생님이 고마웠다.

공명 쌤과 나의 기억

변호사 사무실로 가던 길이었다. 공명 쌤이 너 아직도 준비 안 했냐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말에 전화를 끊고 나갔다.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 목소리가 불편했다. 그래도 내색 안 하려고 애쓰며, 함께 걸어갔다. 함께 걷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일이 터졌다. 나는 선생님의 무슨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이 너무 싫었다. 정말 선생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만 싶었다. 짜증이

났다. 나는 쌤과 함께 가는 곳으로 가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생각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선생님 없이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니. 나는 무력해. 나를 화나게 한 선생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니.’

이런 생각에 나는 화가 나서, 뒤도 안 보고 빠르게 걸어나가 버렸다. 혼자 가는 가고 싶어도, 길을 모르니, 상담소에 계신 토리 쌤에게 전화를 했다. “선생님, 〇〇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싶은데, 위치 아세요?”

나는 검색을 잘 못 한다. 아직도 자신이 없다. 그렇게 나는 화를 씹씩 내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사무실에 앉았다. 이제야, 선생님을 마주보기가 두려웠다.

‘아.. 먼저 달려가 버려서 혼내실 건가... 어떡하지...’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곧, 공명 쌤이 들어 오셨다.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다. 웃는 얼굴을 본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 안 혼낼 건가... 난 괜찮을 것인가...’ 멍해지고 쑥스러워서 선생님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쌤은 별말 없이, 그냥 앉으셨다. 그리고 선생님과 나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선생님을 마주하는 나는 쑥스러웠다. 선생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지하철로 돌아와 헤어질 무렵이 되어서야 선생님께 미안해졌다.

“선생님 미안해요.”

공명 쌤은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요것만 써서 그렇지, 실제로 나와 2년을 산 선생님들은 속이 터져 나갔을 일이다. 아주 속은 새까맣게 타고, 흰머리는 다섯 개가 났을지도 모른다. 아, 나도 괴롭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괴로운 게 힘들다. 적고 보니 자책을 하게 된다. 가슴이 아프다.

독립을 하게 되니, 밥 차려 먹는 게 일이었다. 지금 잇병이 4개가 생겼다.

이 개수는 기록이다. 돈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다. 힘든 부분을 쓰다 보니 독립생활에서 '괜찮은' 부분이 떠오른다. 일단, 중고매장에서 산 분홍색 장롱도 마음에 들고, 나만의 전신 거울도 있다. 공명 뿔이 주신 하얀 책상에 노트북으로 글도 쓸 수 있고, 컴퓨터에다 그림 그릴 수 있는 타블렛이 있다. 노래하고 싶을 때 반주를 할 수 있는 통기타도 있고, 연습할 수 있는 나만의 바이올린도 있다. 며칠 전에 사온, 전자파 차단해주는 미니알로에가 있고, 분홍색 전기장판도 있다. 작년 한해보내기 행사에서, 2012년의 소원은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되는 거라고 무대에 나가서 발표했었는데, 소원도 이뤘다.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는 기억들이 많다. 뽀이나 친구들의 예쁘다는 말 한마디, 피아노 연주가 듣기 좋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었다. 싸우고, 화해도 해보고, 관계를 다져나간 경험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제 독립한 지 3주다. 아직 생활이 위태위태하다. 어딘가 가게 되면, 동네가 낯설어,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밥 차려 먹고, 일어나고, 시간 맞춰 가는 것도 힘들다. 잠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을까 싶기도 하고, 에이, 그냥, 어설픈게 살지 싶기도 하다. 책상 쪽 벽에 붙여둔, 토리 뽀이 적어준 <돌고래 생활 십일계명>이 든든하다.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는데,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든든하고, 강제 강령이라 강령대로 따르고 확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다. 앞으로도, 나아가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림터에서 2년의 세월은 다신 경험하지 못할 값진 시간이었다. 친구들의 치유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열림터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모두 보고 싶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지 모르겠다. 그저 늦게 드러서 죄송할 뿐이다.

요즘은, 스케줄이 비는 시간에 비폭력 대화나 랭귀지 캐스트에서 만난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고 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밥을 먹고 얘기한다. 그 사람들이 밥값을 내준다. 내가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집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고맙다. 외로운 마음에 풍성하고 다양한 울림이 울려 퍼진다. 희망도 생기고,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앞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돌고래이길 바란다. 넓고 자유로운 공간을 헤엄치다가 외로우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억이 되어주는, 열림터라는 공간에 감사하다.

나는 이제 자야겠다.

나중에 또 봐요, 굿나잇.

무제

용기

“나,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그리고 성폭력도 있었어.”

“...”

“내 잘못 아니잖아, 우리 아들 나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거 내 잘못 아니잖아. 전적으로 그놈 때문이야.”

“...”

“하지만... 여보... 미안해, 결혼 전에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

그렇게 그 얘기가 시작되었다. 아들 연주회 픽업 가려고 한 시간에 맞춰 단 오 분 만에, 그 얘기를 해버렸다. 결혼하지 십오 년 되는 해에 난 그 얘기를 신랑에게 할 수 있었다. 전혀 이야기할만한 타이밍도 아니었는데, 내 자신도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수습하기가 어려웠다.

몇 주 전 구성애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어린이 성교육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방식이었고 부모교육을 구성애 선생님

께서 하시게 되었다. 그 수업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하셨다. 아프고 절절하게 호탕하게 유머스럽고 솔직하게 처음 보는 우리들 앞에서... 뭔가 한 대 쿵하고 맞은 것처럼... 복잡한 나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렇지가 않았다는 거다. 그 피해 사실은 그저 그녀의 과거의 한 경험이었을 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녀를 특이하다거나 이상하다거나 해 보이게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건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으리라. 정말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 내 옆에 신랑이 있었다.

그날부터 며칠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도 나도 머리로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했다. 상담 선생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한 구석에는 이혼을 요구하면 어찌죠... 그래도 할 수 없겠죠? 이미 엮어진 물이니까요... 그러나 상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사람들 중에 10%는 아주 진보적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괜찮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10%는 아주 후져서 그 자리에서 이혼해... 그리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보통사람이라고. 그러니 남편이 보통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시간을 주세요.라고.

또 며칠이 흘렀고 난 남편에게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근데 가족들은 다 알아?”

“응.”

“알았어.”

끝이었다. 우리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원래 우리 부부 스타일이기도 했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그 후 나는 안면마비라는 병에 걸렸고 그의 간호가 지극했고 시시때때로 문자로 그가 내 안부를 물었다. 그가 나의 성폭력 경험을 알면서도 나를 정말 걱정하고 있구나, 우린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그 가족이었구나. 단 한명이라도 나의 이 가슴 아픈 비밀을 말하고 들어줄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 남편이라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그해 겨울이 가고 오월이 왔다. 어느 날 택배가 왔고 열어보니, 목걸이와 시집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아차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구나,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 약간 얼떨떨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말을 하기 전보다 더,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구나. 힘들었지... 너의 아픔을 얘기해 줘서 고마워.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얘기 못 한 그 아픔을 우리 같이 보듬자... 이런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가족에게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또 다른 가족에게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엄마, 난 왜 할아버지 한번도 못 봤어?”

“...”

“엄마~”

“응... 돌아가셨으니까!” “작년이었잖아, 그전에는?”

“...”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으리라... 이 녀석은 이제 14살이니까.

“사실은 엄마가 너무 싫어했어. 엄마를 어렸을 때 많이 때렸어.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직도 머리 뒤쪽에는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너 같이 평범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었어.”

“왜 잠을 못 자게 해?”

“음... 그건... 음... 자고 있는데 가슴 같은 데 만지고, 심하게는 방에 데려가서 성폭행도 했어...”

“...”

“그래서 요즘 너한테 캠프같은 데 가서 몸조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만 했을 때부터... 아직 너무 어린데... 엄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고아원 가는 것이 소원이었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엄마 더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안 계시고... 엄마 너무 슬펐는지... 너보다 더 어렸을 때잖아...”

“할아버지 완전 나쁘다... 엄마, 그치?”

“응... 할아버지도 아니지 뭐... 그냥 그놈이야... 할아버지 들을 자격도 없어. 낳았다고 다 엄마, 아빠가 아닌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 힘들었겠다... 완전.”

“응... 엄마 네가 부럽다. 아빠 완전 너라면 그냥 죽잖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인다, 엄마 눈에는.”

“에이... 그건 아니다. 아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들어...” “그런가? 해해.”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다른 차원으로의 위로... 너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을 줄 몰랐네. 처음 너라는 생명을 얼떨결에 마주하고 보니, 부담감이 너무 커서, 또 엄마 스스로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커서, 너를 잘 돌보지 못했고 그 죄책감으로 14년을 살고 있는데... 이런 위로를 너는 나에게 주는구나, 나도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너는 나 자체를 수용하고 있구나. 엄마, 그랬어? 슬펐겠다... 그래서 뭐? 엄마는 그냥 내 엄마야. 그냥 나에게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야. 라고.

스마트폰 채팅에서 스토킹, 성폭력 피해로

복옥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카카오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통해 일상적으로 채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불어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 다양한 피해 사례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악용하여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상담소에서 지원한 A도 이러한 문제로 상담소를 찾아왔다. A는 스마트폰 어플로 가해자를 만나 채팅을 했고, 이후 만남을 한차례 가졌으나 호감을 느끼지 못해 헤어졌다. 이후 가해자는 상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과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하며 A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강간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적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나갔고, 견디다 못한 A가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상담소는 A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심리 상담소를 연계했고, 법적으로 사건지원을 도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심리 상담에도 불구하고 A의 마음의 평안은 쉽게 찾아지지 않

았다.

A의 경우 어플을 통한 채팅이 스토킹으로 이어지면서 협박, 성폭력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다보니 심신이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다. 무엇이 피해자 A를 이토록 힘들게 하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

A는 지속적인 가해자의 연락으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담소에 호소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직장에서 가해자의 어머니의 합의중용 연락을 받게 됐고, 또 한 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야 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끝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합의중용을 했고, A는 휴대폰 번호를 다시 변경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신의 정보도 다시 노출되어 가해자측에서 찾아오거나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뿐만 아니라 A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및 가해자에 의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아 주소지를 상담소로 변경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가해자 기소 이후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이 A의 집으로 송달되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측에서 공탁을 원하니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A에게 연락을 해서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호소하였다. A처럼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인 후유증이 심각하다. 더구나 가해자로부터 인터넷에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던 터라 불안과 압박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는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의 보호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 제정해야

지난 여름, 서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가해자인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A의 경우도 가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이민을 가도 방법이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살아갈 길이 없다’며 지금까지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서산 사건의 가해자는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나체사진이나 채팅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스톱킹의 형태를 보인다. 스톱킹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 오랜 세월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성폭력, 자살, 살인, 가정폭력 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스톱킹 범죄가 더 심각한 범죄로 비화하기 전에 스톱킹 범죄에 관한 개별적 입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상담과 보호, 가해자 교육 및 상담의 철저화

A를 힘들게 한 것은 가해자의 끈질긴 연락과 협박, 집착, 성폭력이었다. 이후 가해자측의 어머니와 변호사까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A는 가해자측의 2차 가해에 대해 더욱 분노했다. 동시에 이런 끈질김은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더라도 출소 이후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져 A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만약 가해자 상담과 재발 방지 교육이 철저히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다면 A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안

정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 상담과 교육은 철저히 실행되어야 한다.

A는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나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채팅내용이 다시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세상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으로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

아무쪼록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담이 이뤄져 A가 원하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4

날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가로 열쇠

1. 무선 인터넷의 기능을 겸한 휴대폰,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당 기기를 이용한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3. 한국 최초로 여성이 18대 ○○○으로 당선되었으나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 2012년은 인공임신중절 시술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경구피임약 재분류 문제 등 여성의 이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각했다. 임신 출산 등의 권리를 일컫는 말.
6.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나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를 뜻하는 한자어. 드라마 <신사의 ○○○>.
9. 2012년 11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항의 전면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10. 2012년, 경구용 사전 ○○○과 사후진급 ○○○에 대한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안이 논란이 되었다.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쓰는 약.
11. 최근 마을 공동체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호 프리즘에서도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라는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13. 성폭력의 문제의 해결에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운동을 주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양식 등을 뜻하는 말.
15. 정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성폭력 범죄를 시작으로 타 범죄로까지 부착 명령이 확대되었다. 부착 방식을 통해 통칭 ○○○로 불리며,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세로 열쇠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 방문, 구매 행위 등의 괴롭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나 처벌을 위한 특별한 법적 조항이 없어 제정이 필요하다. 본호의 사례연구에서 해당 사례를 주제로 다루었다.
2.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는 그동안 피해자의 명예와 ○○○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치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경험을 감춰야 하는 일로 여기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 생활.
3.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일컬을 때 흔히 '○○주자'라고 한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
5. 2012년, 이 행정 기관은 여성의 임신 출산 권리를 침해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의약 부외품·마약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약칭 식약청.
7. 상대방의 고소에 대항하여 맞불 작전으로 고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지를 꺾기 위한 가해자의 ○○○와 이에 대한 협박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문제적이다.
8. 가해자 처벌 강화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는 사회의 성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 커뮤니티.
12. 유엔(UN) ○○○철폐위원회(CEDAW)는 그간 한국 정부에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에 식제를 권고한 바 있다.
14.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해 동의를 동반한 성관계인 ○○○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적이다. 본호 기획특집의 상담사례 분석에서도 가해자측 혹은 수사 재판기관이 이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한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반성폭력〉 5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 | | | | | | | | | |
|----|--|----|---|----|---|--|----|---|----|
| 1 | | | | | 2 | | 3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7 | |
| | | | | 8 | | | 9 | | |
| 10 | | | | 10 | | |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14 |
| | | 15 | | | | | | | |
| | | | | | | | | | |

정답을 12월 말까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미연 기푸름 김가형 김경호 김대근 김미경 김미레 김미자 김서화 김선영 김성훈 김영미 김영숙 김유숙 김은중 김태연 김효진 나경미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혜정 박수지 박영수 박정옥 백복련 서복련 서정의 서화숙 소희 손신혜 슌 신은영 신종필 우성희 이보은 이성진 이승이 이영근 이재원 이정효 장혁임 전미르 정은희 정인호 채송희 채송희 최신헌 최정은 최경희 최현수 한경아 함경진 허정연 홍숙기 황보선경

2012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득 강명숙 강미경 강미연 강보길 강선미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은주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현규 강혜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예지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고희정 광경화 광옥미 광옥이 광현지 구민희 구분준 권구주 권기욱 권기현영 권나현 권명진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선 권인자 권정 권주희 금철영 기푸름 기화순 김가형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주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수 김광진 김효선 김기혜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대근 김대숙 김도홍 김도홍 김도래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동순 김매정 김명숙 김명희 김문민 김미경 김미정 김미라 김미랑 김미레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주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석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경 김보연 김보화 김상미 김상정 김상호 김삿별 김서화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에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성훈 김세훈 김세희 김세희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아리 김애라 김양익 김엘림 김연정 김연정 김연우 김연정 김연희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숙 김영숙 김영선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요한 김용란 김용백 김우혁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숙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중 김은하 김은혜 김은정 김의창 김이슬 김인숙 김인에 김인혜 김일륜 김자경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환 김중수 김종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진숙 김지연 김택한 김태섭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 김하정 김한상 김한선에 김혜경 김현 김현정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정 김혜정 김혜정 김혜수 김혜수 김혜원 김혜원 김혜정 김혜진 김혜진 김혜현 김화숙 김화영 김효선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희정 김희정 나경미 나길희 나미나 나선영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민영 남영미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길옥 노미선 노민희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마경민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석진 문성훈 문수연 문숙영 문영민 문지영 문지은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옥 박경훈 박다위 박덕임 박명숙 박미라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희 박상희 박상희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성훈 박세정 박소라 박소립 박소연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승일 박아름 박아름 박영 박영래 박영주 박용철 박유미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 박정란 박정순 박정연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종선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에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숙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현희 박혜진 박희연 박희주 방기연 방은제 배경 배동란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순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옥정 백인에 백지선 백지훈 백현 변계희 변순임 상무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범원 서복련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윤숙 서정에 서정표 서정훈 서정희 서태자 서해인 서화숙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성길정 성나리 성지는 소병만 소희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보경 손연선 손우성 손정혜 손준성 손희정 송미현 송민정 송수영 송승훈 송애팡 송요신 송은숙 송은주 송치선 송호균 신겸우 신경혜 신동현 신동훈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영미 신원계 신윤진 신은영 신은재 신은주 신자향 신정혜 신종필 신종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심소숙 심수의 심진섭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안민 안보라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창혜 안철민 안조룡 안하영 안하영 안현운 안효선 안홍자 양동훈 양미초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영희 양윤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인숙 엄명숙 오경희 오광수 오미근 오세희 오송환 오승민 오승이 오자경 오지영 오정진 오정희 오지원 오진아 오현주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춘희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장연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소영 유숙조 유여원 유예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혜숙 유현광 유환숙 육상근 육향순 윤나래 윤법석 윤소정 윤소희 윤수연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숙 윤영훈 윤용미 윤은정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종옥 윤준섭 윤지영 윤지연 윤지원 윤희영 윤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은 이경자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연 이규화 이금란 이금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도규 이도원 이도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만정 이병주 이보라 이보은 이부덕 이사랑 이상근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선경 이선영 이선영 이성수 이성실 이성이 이세원 이소립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승이 이승이 이수안 이수연 이수용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신정 이어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경 이원수 이원우 이우정 이윤정 이윤선 이윤우 이윤우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정 이은미 이은비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숙 이은정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 이재원 이정민 이정복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주현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원 이태숙 이한종태 이혜사랑 이향삼 이향화 이현숙 이현희 이혜경 이혜경 이혜일 이혜정 이혜진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화자 이화정 이희경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이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자영 임주원 임주희 임지숙 임지선 임치순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애 장영애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정희 장종순 장진 장혜란 장효정 장광우 전동일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보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혜영 전희완 정경아 정경애 정교화 정귀원 정규리 정다미 정다희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명종 정문영 정민이 정보담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숙정 정순희 정슬아 정안나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에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정 정은선 정은희 정인호 정인호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숙 정지현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해담 정현 정현주 정현희 정혜선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나 가이 파울로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천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경 조은주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우 조일 조일래 조재우 조정옥 조정은 조종선 조지혜 조진희 조현미 조혜진 조혜진 주광용 주리아 주명의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순 지현우 진세록 진석숙 진태란 차성안 차우진 차인순 차현영 채송희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대원 최대용 최동석 최란 최명숙 최미선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아 최성숙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소란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신헌 최아람 최연순 최영애 최영지 최우경 최완열 최용득 최우영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경 최은수 최은영 최은영 최정민 최정운 최정은 최정익 최정희 최지나 최지녀 최지영 최진안 추민주 추정희 추주형 추혜인 춘옥 하다영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진옥 한계영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정 한석구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숙 한재철 한재운 한희정 함경진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은주 허이화 허정연 허정익 허정익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홍남영 홍만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숙기 홍순기 홍유미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동하 황미선 황보선경 황성기 황성임 황숙희 황순경 황은순 황재호 황정원 황정진 황주영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100주년기념교회 토란어린이집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랑마음 (주)한국아마자기마작 한전부녀회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린터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옥진 권익순 권진구 권형주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삼화 김선영 김예지 김옥란 김은중 김재련 김경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연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나인선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트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지만(주)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배대규 변혜정 손광석 시명숙 시명연 신상호 신혜정 심공채 안백민 안지혜 안채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호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도림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명기 이병구 이병우 이상수 이상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희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광) 정순희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숙 정휘재 조선헌 조성천 조영미 조영화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웰테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순아

바

성폭력 → Vol. 5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백미순

만든이 _ 김다미

디자인 _ 디자인IS

펴낸날 _ 2012년 12월 31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2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